##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97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김윤덕・이기헌・이춘석

윤준병 • 박해철 • 허 영

김교흥 · 임오경 · 안태준

김재원 · 정준호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 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·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·개

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0조 및 제10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 중 ""문화산업완성보증"(이하 "완성보증"이라 한다)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(引渡)할 수 있도록"을 ""문화산업보증"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문화상품을 기획·개발·제작 ·생산·유통·수출(이하 "제작등"이라 한다)하는 각 단계에서"로 한 다.

제10조의 제목 "(제작자의 제작지원)"을 "(우수문화상품의 제작등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제작을"을 "제작등을"로, "제작자"를 "제작자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작의"를 "제작등의"로, "제작자 지원 등에"를 "지원에"로 한다.

제10조의2의 제목 중 "완성보증계정의"를 "문화산업보증계정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작 및"을 "제작등과"로, "완성보증업무를"을 "문화산업보증업무를"로, "완성보증계정을"을 "문화산업보증업무를"로, "완성보증계정을"을 "문화산업보증계정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완성보증계정에"를 "문화산업보증계정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완성보증계정을"을 "문화산업보증계정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완성보증계정을"을 "문화산업보증계정을"로, "제작하는"을 "제작등의 대상이 되는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문화산업보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문화산업보증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"문화산업완성보증"(이하	13. <u>"문화산업보증"이란 문화상</u>
"완성보증"이라 한다)이란	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
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	을 유통하는 자가 문화상품
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	<u>을</u>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
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	・유통・수출(이하 "제작등"
(引渡)할 수 있도록 대통령	이라 한다)하는 각 단계에서
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	
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	
출・급부(給付) 등을 받음으	
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	
하는 것을 말한다.	
14. ~ 21. (생 략)	14. ~ 21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제작자의 제작지원) ① 문	제10조(우수문화상품의 제작등
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·도	지원) ①
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	
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<u>제작</u>	
<u>을</u> 촉진하기 위하여 <u>제작자</u> 에	<u>제작등을</u>
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	- <u>제작자 등</u>
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	

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<u>제작의</u> 범위와 <u>제작자</u>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(<u>완성보증계정의</u> 설치 7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<u>제작 및</u> 문화산업 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<u>완성보증업무를</u>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<u>완성보증계정</u>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### 1. · 2. (생략)

- ② <u>완성보증계정에</u> 대한 출연 금·보증수수료 등의 수입·운 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<u>완성보증계정</u>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<u>제작하는</u>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②
지작등의지원
에
<del></del>
제10조의2( <u>문화산업보증계정의</u>
설치 등) ①
제작등과
문화산업보증업무를
문화
<u>산업보증계정을</u>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산업보증계정에
· ③문화산업보증
 계정을
제작등의 대상
이 되는
_ <del>,,</del>

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	
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.	